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15호

2021.9.13.(월)



목 차

◆ 고 시

제2021-513호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2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25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21-260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제2021-261호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21-26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21-9호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고시 13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3호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이·미용업 방역관리 강화대책(중대본 회의 '21.9.7.)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기간: ' 21. 9. 13.(월) 0시 ~ 10. 3.(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이·미용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이·미용업 방역수칙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이·미용업 방역수칙(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삼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 수칙	① 대화자제 ■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② 예약제 운영 ■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 로 분산 운영(권고)	■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 후 이용(권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③ 수칙준수 점검 ■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④ 종사자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물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9월 13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25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조례 간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조례에 띄어쓰기 오류, 중복 표현 등이 존재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 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5급 이상 상급기관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 나.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제7호 삭제)
- 다. 직장협의회설립증 교부 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 (안 제4조제4항)
- 라.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 간 합의는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제1항)
- 마. 협의회 해산 시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 신설 (안 제12조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 노사협력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073 / FAX 02-399-9779
- 이메일 : ckr0620@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공지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n.go.kr>

붙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260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사립학교 시설비 관리 담당기관의 이원화로 업무 공백 발생
- 교육시설관리본부에 사립학교회계전출금 교부 권한을 부여하여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및 집행 도모

2. 주요내용

-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시설사업 관련 사립학교회계전출금 교부 권한 단서조항 추가(안 제26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보내실 곳 :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2-77)

* 연락처 : 전화 02) 3999-632 FAX : 02) 3999-760

* 이메일 : jsh935@sen.go.kr

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261호**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 미래 산업사회에 대비하여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분야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운영 구조와 프로그램을 개편하고자 함
-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도입됨에 따라 신산업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학교 간 교육 지원, 일반고 학생 전공 탐색 지원 등 공동실습소를 활용한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공동실습소를 신산업분야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서울특별시의 학교 교원과 학생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신산업분야 및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산학협력 등의 지원, 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등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한 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함(안 제6조)
-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제시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진로직업교육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561, FAX 02-399-9755

○ 이메일 : designsam@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1-26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실적이 저조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최근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는 포함하는 한편, 조문에 남아 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잘못된 표현 등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범위 확장 (안 제1조)
- 나. 개최실적 저조한 위원회 삭제, 최근 설치 위원회 포함 (안 제2조)
- 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안 제4조)
- 라. 잘못된 표기는 바로 잡고, 따로 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없애 간결하게 하며, 일본식 표현, 불필요한 한자어, 잘못된 피동표현, 어색한 조사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안 제3조,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 정책·안전기획관, [03178] 서울특별시 중로구 송월길 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책·안전기획관(전화 02-399-9310, FAX 02-399-9741, 이메일 newton21@sen.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등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공지사항 (경로: HOME > 행정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21-9호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고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2021.9.2.)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9.7.)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과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합 계		11,583,631,595	10,849,193,686	734,437,909	6.8
이전수입	소계	11,135,224,072	10,395,395,659	739,828,413	7.1
	중앙정부이전수입	6,712,439,028	5,972,924,280	739,514,748	12.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406,101,173	4,406,214,802	△113,629	△0.1
	기타이전수입	16,683,871	16,256,577	427,294	2.6
자체수입	소계	122,098,456	127,488,960	△5,390,504	△4.2
	교수-학습활동수입	1,275,118	1,411,398	△136,280	△9.7
	행정활동수입	4,736,472	4,900,646	△164,174	△3.4
	자산수입	6,801,842	11,891,892	△5,090,050	△42.8
	이자수입	7,693,431	7,693,431	0	0
	금융자산회수	19,190,620	19,190,620	0	0
	기타수입	82,400,973	82,400,973	0	0
차입	소계	0	0	0	0
	지방교육채	0	0	0	0
기타	소계	326,309,067	326,309,067	0	0
	전년도이월금	326,309,067	326,309,067	0	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11,583,631,595	10,849,193,686	734,437,909	6.8
1.유아및초중등교육	10,809,269,908	10,169,134,255	640,135,653	6.3
가.인적자원운용	5,074,711,696	5,101,251,977	△26,540,281	△0.5
나.교수-학습활동지원	713,977,712	602,363,744	111,613,968	18.5
다.교육복지지원	1,438,220,154	1,423,800,864	14,419,290	1.0
라.보건/급식/체육활동	171,643,748	137,902,666	33,741,082	24.5
마.학교재정지원관리	2,174,388,311	2,165,689,528	8,698,783	0.4
바.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236,328,287	738,125,476	498,202,811	67.5
2.평생·직업교육	32,343,864	32,108,015	235,849	0.7
가.평생교육	31,484,326	31,188,477	295,849	0.9
나.직업교육	859,538	919,538	△60,000	△6.5
3.교육일반	636,462,834	542,739,427	93,723,407	17.3
가.교육행정일반	142,868,009	118,804,128	24,063,881	20.3
나.기관운영관리	68,054,857	56,298,978	11,755,879	20.9
다.지방채상환및리스크	425,539,968	367,636,321	57,903,647	15.8
4.예비비	105,554,989	105,211,989	343,000	0.3
가.예비비및기타	105,554,989	105,211,989	343,000	0.3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